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59
----------	------

2021년 8월 31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8월 10일, 유정희 의원 외 12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1년 8월 31일 상정·수정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유정희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-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함
  - 전체 문맥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함(안 제6조제1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어 등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의 권고기준과 표준 맞춤법 및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안 제16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‘자(者)’를 ‘사람’으로 바꾸고자 하나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·회의 안전 검토, 심의·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(個人)뿐만이 아닌 용역업체나 연구단체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개인과 단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‘자’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- 또한, 안 제6조제1항 중 공공성 확보 계획 승인 근거를 ‘제5조’에서 ‘제5조 제4항’으로 수정하여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.

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 ① ~ ③ (생략)

④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성 확보계획은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.

⑤ (생략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승인된 공공성 확보 계획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 및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(個人)뿐만이 아닌 단체가 될 수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.

8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5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8월 31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승인된 공공성 확보 계획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 및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(個人)뿐만이 아닌 단체가 될 수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.

## 2. 주요 골자

-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(안 제6조제1항)
- 내용 중 '자'가 개인뿐만 아닌 단체를 의미할 경우 현행대로 함(안 제16조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제5조에 따라”를 “제5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안 제16조 중 ‘사람에게’를 ‘자에게’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</b>            시장은 <u>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5조에서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서울 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사업시행자는 제5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 계획과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,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<b>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</b>            ----- <u>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제5조제4항</u>-----</p> <p>--- <u>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도별</u> -----</p>	<p><b>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</b>            ----- <u>사업시행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</u> -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b>제16조(수당지급)</b>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<u>자</u>,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, 심의·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<u>자에게</u>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6조(수당지급)</b> -----</p> <p>----- <u>사람,</u> -----</p> <p>----- <u>사람에게</u> -----</p> <p>-- <u>범위에서</u> -----</p>	<p><b>제16조(수당지급)</b> -----</p> <p>----- <u>사람,</u> -----</p> <p>----- <u>자에게</u> -----</p> <p>-- <u>범위에서</u> -----</p>

##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운영과 관련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사업시행자로 하여금”을 “사업시행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항에 대하여”를 “사항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”를 “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운영시”를 “운영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업시행자로 하여금”을 “사업시행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에서”를 “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5조에서 승인받은”을 “사업시행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5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”을 “제5조제4항”으로, “연도별”을 “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도별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그에 관한 완료내역”을 “완료내역”으로 한다.



제8조제2항 중 “사업시행자에 대하여”를 “사업시행자에게”로, “사항에 의하여”를 “사항에 대하여”로, “에 대하여”를 “을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취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, “승인”을 “확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대한”을 각각 “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확보계획의”를 “확보계획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”으로, “민간단체·법인·기업·학계”를 “민간단체·법인·기업·학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차례에 한정하여”를 “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척하여야 한다”를 “제척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수행중”을 “수행 중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호 중 “부적당하다고”를 “적당하지 않다고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자,”를 “사람,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기한으로”를 “시행완료 시까지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조(적용범위)</b> 이 조례는 세빛섬 사업의 시설 및 <u>운영과 관련하여</u> 적용한다.</p>	<p><b>제3조(적용범위)</b> ----- ----- <u>운영에</u> -----.</p>
<p><b>제4조(운영 정상화)</b>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사업시행자로 하여금</u> 빠른 시일 내 모든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(이하 “합의서”라 한다)에서 합의된 <u>사항에 대하여</u>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약서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조(운영 정상화)</b> ① ----- ----- <u>사업시행자가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사항을</u> ----- -----.</p>
<p><b>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</b>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(이하 “공공성 확보계획”라 한다)을 제출받아야 하며,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<u>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</u>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세빛섬 <u>운영시</u>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하기로 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</p>	<p><b>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</b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내용이</u> <u>모두 포함되어야</u>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운영 시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/p>

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공성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,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.

**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**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5조에서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4항 및 이 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,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시행완료내역 정산)**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시로부터 승인받은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을 시행하고, 매년 그에 관한 완료내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 시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.

-- 사업시행자가 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제4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.

**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** ① ----- 사업시행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제5조제4항 -----  
-----  
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도별 -----  
-----  
-----.

**제7조(시행완료내역 정산)** -----  
-----  
----- 완료내역 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지체상금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(매년 물가상승률 포함)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행완료내역 정산 후 7일 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을 승인하는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 설치) 시장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1.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
2.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실행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
3. (생략)
4. 공공성 확보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5. (생략)

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생략)

제8조(지체상금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\_\_\_\_\_ 사업시행자에게 \_\_\_\_\_ 사항에 대하여 \_\_\_\_\_ 을 \_\_\_\_\_ 취하여야 \_\_\_\_\_.

③ \_\_\_\_\_ 제 2항에 따라 \_\_\_\_\_ 확인 \_\_\_\_\_.

제11조(위원회 설치) \_\_\_\_\_

1. \_\_\_\_\_ 관한 \_\_\_\_\_
2. \_\_\_\_\_ 관한 \_\_\_\_\_
3. (현행과 같음)
4. \_\_\_\_\_ 확보계획 \_\_\_\_\_
5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위촉위원 : 시의원 1명, 변호사 1명 및 공인회계사 1명, 공공성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,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·기업·학계 등에서 공공성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명

④ (생략)

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(생략)

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

2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제15조(위원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.

음)

③ \_\_\_\_\_  
사람을 \_\_\_\_\_.

1. (현행과 같음)

2. \_\_\_\_\_ 서울특별시의회의원 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 
민간단체·법인·기업·학계 \_\_\_\_\_  
\_\_\_\_\_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\_\_\_\_\_  
\_\_\_\_\_ 차례만 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제척된다.

1. \_\_\_\_\_  
\_\_\_\_\_  
수행 중 \_\_\_\_\_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위원 위촉 해제) 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.

1. ~ 2. (생략)
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16조(수당지급)**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,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, 심의·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7조(위원회 존속기한)**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 기한으로 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\_\_\_\_\_  
\_\_\_\_\_  
\_\_\_\_\_  
-- 적당하지 않다고 -----

**제16조(수당지급)** -----  
\_\_\_\_\_  
----- 사람, -----  
\_\_\_\_\_  
\_\_\_\_\_  
-- 범위-----.

**제17조(위원회 존속기한)** -----  
\_\_\_\_\_  
----- 시행완료 시까지로  
-----.